

계룡시조례 제 호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승인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21인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호와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21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명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면·동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